

제 908 호  
1982. 5. 6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편집 : 공보관 이송우  
전화 725-7834  
인쇄 : 서울특별시통합발간실  
전화 725-6090

# 시보

## 차 례

◎ 조 례	
제 1623 호 :	서울특별시정책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3
제 1624 호 :	서울특별시립후생식당설치조례폐지조례..... 3
제 1625 호 :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 3
제 1626 호 :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 4
제 1627 호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및지방소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4
제 1628 호 :	서울특별시도시가스공급조례중개정조례..... 6
◎ 규 칙	
제 1974 호 :	서울특별시정책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 6
◎ 훈 령	
제 571 호 :	서울특별시립병원임상연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 9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고 시

제 188 호 :	도시계획시설 ( 광장, 유통업무설비 ) 변경결정및지적 승인.....	10
제 189 호 :	도시계획사업 ( 전기공급설비 ) 시행허가변경.....	11
제 190 호 :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시행인가및변경인가.....	11
제 191 호 :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12
제 192 호 :	도시계획사업 ( 여객자동차정류장 ) 시행변경허가.....	12
제 193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	13
제 194 호 :	도시계획시설 ( 학교, 도로 ) 결정, 변경결정및지적 승인.....	14
제 195 호 :	도시계획시설 ( 학교, 도로 ) 결정에 대한지적승인.....	15

◎ 공 고

제 189 호 :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공람공고.....	16
제 193 호 :	전기공사업면허실효.....	16
제 194 호 :	건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	17
제 195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공람공고.....	17
제 197 호 :	건설업 ( 단종 ) 면허취소공고.....	19
제 199 호 :	K,S 표시정지처분공고.....	19
제 200 호 :	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20
제 201 호 :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20
제 202 호 :	구로지구환지계획공람공고.....	20

◎ 사 영

**조** **예**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정책자문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물 이에 공포한다

1982. 5. 10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 서울특별시조례제 1623 호

서울특별시정책자문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정책자문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2항중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제 4 조 제 2항중 "그 직무를 대행하되 제1부시장이 우선한다"를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후생식당 설치조례폐지 조례물 이에 공포한다.

1982. 5. 10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 서울특별시조례제 1624 호

서울특별시립후생식당  
설치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립 후생식당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 개정조례물 이에 공포한다.

1982. 5. 10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 서울특별시조례제 1625 호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1항중 "11 인이상 17 인 이내"를 "13 인이상 20 인이내"로 하고 제3조제 5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⑤당연직위원은 구획정리과장, 도시계획과장, 관제과장, 건설행정과장,

주택개발과장, 재개발과장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의조례중 개정조례틀 이에 공포한다.

1982. 5.10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㉔

◎ 서울특별시조례제 1626 호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의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중 "보상"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틀 이에 공포 한다.

1982. 5.10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㉔

◎ 서울특별시조례제 1627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및지방소방  
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사인 지방공무원의 임상연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액) ①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별표9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근무수당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지급한다.

②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3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③전공의 보수는 서울대학병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④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된 지방전문직공무원인 의사에게는

<p>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p> <p>제 3조 (임상연구비) ①병원에 소속된 의무직공무원 및 전문직공무원인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4와 같이 임상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p>제 4조 (야간응급진료에 대한 실비) 지방전문직공무원인 의사가 근무시간외에 야간응급진료에 종사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5천원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조 및 제 3조, 제 4조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	---

(별표 1) 의무직공무원의진료업무수당

급 류 별	2 급	3 급	4 급	5 급
월 지급액	428,000 원	410,000 원	466,000 원	466,000 원
비 고	병 원 근 무		보 건 소 근 무	

(별표 2) 지하철근무수당지급

급 류 별	6급·7급, 기능직 1등급 - 7등급	8급·9급, 기능직 8등급 - 9등급	기능직 10등급 교 용 원
월 지급액	17,500 원	15,000 원	12,500 원

(별표 3) 의사의진료수당지급 (원)

구분 호봉	의사로서의 근무년한수	병 원		보 건 소	
		1 등 급	2 등 급	1 등 급	2 등 급
1 호 봉	1 - 3	240,000 원	120,000 원	260,000 원	180,000 원
2 " "	4 - 6	245,000 원	125,000 원	265,000 원	185,000 원
3 " "	7 - 9	250,000 원	130,000 원	270,000 원	190,000 원
4 " "	10 - 12	255,000 원	135,000 원	275,000 원	195,000 원
5 " "	13년이상	260,000 원	140,000 원	280,000 원	200,000 원

※ 병원의 치과과장은 병원전문직 1등급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음.

(별표 4) 임상연구비 지급	
구분	급부별 월지급한도액
의무직	2, 3급 200,000원
전문직의사	1등급 300,000원
	2등급 200,000원

※ 단, 전문직의사 1등급의 공동과제 임상연구비는 과제당 월 30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병원의 치과과장은 병원전문직 1등급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음.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 5.10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인

◎ 서울특별시조례 제 1628 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공급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 조 제 2 항중 "다음표"를 아래와 같이 한다.

가 스 사 용 료		용 구 손 료	
구분	요금	등급	손료
기본요금 (10㎡까지)	3,180원	F - 3	450원
11-25㎡까지 (㎡당)	318원	F - 5	970원
26㎡이상 (㎡당)	379원	F - 7	1,100원
		F - 10	2,270원

부 칙  
 이 조례는 1982년 3월 21일부터 적용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정책자문위원회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2. 5.10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인

◎ 서울특별시규칙 제 1974 호  
 서울특별시정책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정책자문위원회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정책자문위원회조례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정책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원회) ①위원회 아래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행정관리분과위원회
2. 홍보
3. 문화예술
4. 보건사회
5. 도시계획
6. 환경녹지
7. 상하수
8. 교통관광
9. 민방위
10. 종합건설
11. 치안

②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 3 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기획관리실장이 서기는 정책조정담당관이 되고 각 분과위원회의 서기는 주무과장이 된다.

제 4 조 (행정관리분과위원회) 행정관리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개선 및 전산화에 관한 사항
2. 시정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파제의 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조 (홍보분과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보행정 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정홍보 및 시민의 시정 참여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 조 (문화예술 분과위원회) 문화예술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사업육성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 개발과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4. 종교 및 문화예술 단체에 관한 사항
5. 세종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 조 (보건사회 분과위원회) 보건사회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 방역 및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영세민구호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 부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8 조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도시계획

의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 및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이용 계획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사항
3. 구획정리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청산에 관한 사항
4. 도심기능 분산 도시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적 업무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 조 (환경녹지 분과위원회) 환경녹지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한강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기 소음등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공원 및 녹지조정에 관한 사항
5. 남산 보호에 관한 사항
6. 외국 수목원 조성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0 조 (상하수분과위원회) 상하수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상하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급수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3. 수도요금 사정에 관한 사항
4. 하수, 치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하수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6. 한강변 제방, 수문등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1 조 (교통관광 분과위원회) 교통관광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통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운수업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4. 시범 교통 대책에 관한 사항
5. 지하철건설 계획 및 기술에 관한 사항
6. 지하철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2 조 (민방위 분과위원회) 민방위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민방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동원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방 행정의 강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3 조 (종합건설 분과위원회) 종합건설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건설계획에 관한 사항
2. 도로시설의 개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시민주택과 아파트건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불량건물 정리에 관한 사항

5. 종합운동장 건설계획 및 설계 시공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6. 서울대공원 건설계획 및 설계 시공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4조 (치안분과위원회) 치안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치안질서확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선도에 관한 사항

3. 민경 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찰행정에 관한 사항

부 칙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에 관한 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2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훈령제 571호

서울특별시립병원임상연구에 관한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임상연구서 제출 및 임상연구비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조 (대상) 임상연구비는 시립병원에 소속하는 의무직 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중 의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임상연구의 과제별로 지급한다.

제 4조중 제 1항 및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조 (지급의 한계) ①연구비는 매연구 과제마다 지급하되 지급한도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연구과제가 방대하여 1인이상 공동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매연구 과제마다 36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독과제임상연구비지급한도액

구분	의무직		전문직(의사)	
	2급	3급	1등급	2등급
과제당지급한도액	2,400,000원	2,400,000원	3,600,000원	2,400,000원

다만, 치과과장의 임상연구비는 전문직 1등급의 대우를 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88호

도시계획시설(광장,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및지적승인

1. 당시 판내 도시계획시설(광장, 유통업무설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조, 13조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 7 조의 2 및 건설부고시제 521호(81.12.31)의 권한위임사항, 도시계획 변경통제규정제 3조 제 3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5. 8.

서울특별시장

○ 광장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가 락 광 장	가 락 동 338 번 지 일 대	18,830 ㎡	
변경	"	"	91,000 ㎡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유통업무설비	가 락 동 298 번 지 일 대	547,265 ㎡	가 락 광 장 증 복 부 분
변경	"	"	538,500 ㎡	8,765 ㎡ 제 외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89 호**

도시계획사업 (전기공급설  
비) 시행허가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74 호 (80.11.7) 로 도시계획사업 (전기공급설비) 시행허가된 관내 강남구 방배동 505 일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고시 제 521 호 (81.12.31) 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5. 10  
서울특별시장

○ 변경내용

당 초 시 행 기 간

80.11.7-82.3.31

변 경 시 행 기 간

80.11.7-83.6.30

**○ 서울특별시고시제 190 호**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및 변경인가

1. 건설부고시 제 470 호 (73.12.1) 로 구역지정된 효창제 2구역의 3개구역에 대하여 서울시공고 제 139 호 (81.5.19) 로 주택개발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및 변경인가 내용을 토

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2. 도시재개발법 제 30 조 및 동법 시행령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발과 및 관할구청에 비치한다

1982. 5. 10  
서울특별시장

가. 고시내역

구역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효창제 2구역 북정	용산구효창동 3-149 일대	16,230	신규인가
	중구북정동 11 일대	5,653.5	

구역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금호제 4 구역	성동구금호동산 1,4,15 일대	49,795	변경인가 (기간연기)
돈암제 3 구역	성북구돈암동9,11,80산 6 일대	267,684	

나. 시행자

호창 2, 금호 4, 돈암 3 : 서울특별시장

목적구역 : 제 1 지구, 목정아파트

재개발조합 (목정동 11-67)

제 2 지구 충무아파트 재개발조합 (목정동 11)

다. 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86.12.30

라. 설계도서 및 조서

신규인가구역 : 별첨 (생략)

변경 : 기인가와 동일  
(생략)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관

제인의 주소 설명

신규인가구역 : 별첨 (생략)

변경 : 기인가와 동일 (생략)

바. 목적구역 재개발조합사업 시행

인가신청서 정관

사업시행계획서 :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91 호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1.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관리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공고  
제 12 호 (80.1.16) 로 공람한바 있

는 용암2지구 일부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  
법 제 41 조 및 동법시행령 제 7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구역 관리처분제  
획을 인가한다.

2. 관리처분 계획내용은 토지 및 건  
축물 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하고 관  
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발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주택과에 비치 열람한다.

1982. 5. 11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고시제 192 호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  
장) 시행변경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62 호 (80.6.26) 로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허  
가되고 동 공고제 161 호 (82.4.17) 시  
행변경사항 공람공고한 지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기간 연기원에 의하  
여 다음과같이 시행계획을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521 호 (81.12.31)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도시정비과에 비

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5. 11

서울특별시

-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서초동 156-30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허가
- 다.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동 89-21  
삼성여객(주)대표 최영순
-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공 - 1981.3.31  
준공예정일 - 1982.3.31  
변경준공예정일 - 1982.9.30
-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및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93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 1. 서울특별시고시제 144 호 (77.5.11)로 학교변경결정 (추가) 및 지적승

인원 강남구반포동 753 번지의 1 필지  
대하여 다음과같이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하연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521 호 (81.12.31)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5. 11

서울특별시

-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반포동 753 번지의 1 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 다. 학교부지면적 : 42,012 ㎡
- 라. 사업의 규모 : 보일러실 설치 (59.4 ㎡)
- 마. 사업시행자 : 학교법인 일주학원 이사장 이임용
- 바. 사업예정기간 : 1982.5-1982.7.31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 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생략)

<p>◎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4 호</p> <p>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결 정 및 지적승인</p> <p>1. 당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 설 (학교, 도로) 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3 조와 건설부표시 제 521호</p>	<p>(81.12.31)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같이 결정 변경결정 및 지 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시설계획과와 관할시, 구, 군청 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	---

가. 도시계획 시설조서 (학교)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비고
신설	중경고등학교	용산구서빙고동 4 - 1일대	21,620	기존학교
·	임마누엘여맹학교	도봉구수유동 484-21일대	3,144	·
·	덕양고등학교	경기도고양군신도읍 덕은리 519-5 일대	23,783	
·	철산동국민학교	경기도광명시철산동 32-12 일대	16,665	
·	하안국민학교	경기도광명시하안동 652 일대	17,260	
·	광명서국민학교	경기도광명시광명동 164 일대	14,179	

나. 도시계획시설조서 (도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소로	3	6	42	도봉구수유동484-21	도봉구수유동 484-21	
변경	·	·	·	·	·	·	폐지
신설	·	·	·	50	도봉구수유동산162-10	도봉구수유동 484-21	
기정	·	·	·	170	경기도광명시철산 동 57	경기도광명시철산 동 80-2	
변경	·	·	·	·	·	·	폐지
기정	·	2	8	60	경기도광명시철산 동 57-17	경기도광명시철산 동 32-12	
변경	·	·	·	·	·	·	폐지

구분	등급	류별	축원(㎡)	연장(㎡)	기 점	총 점	비고
기정	소로	3	6	125	경기도광명시광명동 222-1	경기도광명시광명동 219	
변경 기정	"	"	"	"	"	"	폐지
변경 기정	"	3	6	10	경기도광명시광명동 220	경기도광명시광명동 225	
변경 기정	"	"	"	"	"	"	폐지
변경 기정	"	3	6	30	경기도광명시광명동 221	경기도광명시광명동 221	
변경	"	"	"	"	"	"	폐지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1982. 5. 12.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고시제 195 호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결정에 대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 50 호 (82.2.3)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521 호 (81. 12. 31)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도시정비과에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서 보인다.

1982. 5. 12.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학교)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 ㎡ (평)	비 고
신 설	학 교	은평구구산동산 22 일내	16,437 (4,972)	
"	"	" 신사동 266 "	15,468 (4,677)	
"	"	" 증산동산 24 "	15,321 (4,635)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 (평)	비고
신설	학교	은평구불광동산 143 일대	11,607 (3,511)	
"	"	" " 산 32 "	17,891 (5,412)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나. 도시계획시설 (도로) 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고
신설	소로	3류	6	120	은평구구산동산 22	은평구구산동산 21	
"	"	"	6	30	" 불광동산 143-1	" 불광동산 143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189 호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관리처분  
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91 호 (77.4.1)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만리구역 (중구 만리동 197,200 일대 8875 평)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 42 조 및 동법 제 65 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 41 조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관계도서는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본공고로 갈음한다.

1982. 5. 6.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193 호

제 2 종 전기공사면허실효

전기공사법 제 12 조 2 항 4 호에 의거 제 2 종 공사면허폐지신고를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동법 제 42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2. 4. 28.

서울특별시장



다 음					
업 체 명	대표자	소 계 지	면 허 별 호	제 지 사 용	
금성통신공사(주)	남기만	구로동 588	세 2 종 132 호	제 1 종 공사업 면허양수	
<p>◎ 서울특별시 공고제 194 호</p> <p>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p> <p>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8 조의 규 정에 의거 전기용품 제조업허가들</p>			<p>다음과 같이 취소하고 동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p> <p>1982. 5. 10.</p> <p>서 울 특 별 시 장</p>		
다 음					
업 체 명	대표자	소 계 지	허가번호	제 조 구 분	취 소 사 용
현명산업(주)	이용현	가리봉동 536-6	1-8-102	전동력응용 기계기구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7 조 위반
<p>◎ 서울특별시 공고제 195 호</p> <p>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p> <p>1. 건설부고시 제 768 호(64.1.24)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소로 2 류 노선인 이문 2 동 346-156 번지 도로포장공사 구간내 저촉 편입되 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 시계획법 제 25 조 2 . 및 동법 제 10 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고시 제 521 호(81.12.31) 관한 위임사항에 의 거 이에 공고함.</p> <p>2.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봉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p>			<p>하여는 위 공고로 갈음함.</p> <p>3.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 에 비치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이 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가. 공람장소 : 동대문구청 토목과 나. 공고기간 : 82.5.11-82.5.24</p> <p>1982. 5. 11</p> <p>서 울 특 별 시 장</p> <p>— 공 략 개 요 —</p> <p>1. 사업시행지 : 이문 2 동 346-156 번지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이문 2 동 346-156 번지 도로포장공사</p>		

<p>3. 사업의 규모 : 도로포장 폭 8 M 연장 23 M</p> <p>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동대문 구청장 )</p> <p>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p>	<p>인가일 - 82. . . .</p> <p>6. 사용토는수용할 토지 : 별첨조서</p> <p>7.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p>
--	---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 입 면 적	실제이 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 용	
1	이문동 346- 156	대지	213	213		이창성	이문동 346- 138				
2	이문동 346- 196	"	3	3		이회복	이문동 346- 146	기정회 청량리 205- 125	가압류 접수번호 57358 호 접수일자 1980.8.23.	주식회사 중구 서울신 남대문 타운행 로 2 가 ( 인천 10-1 남지점 )	근저당권 설정 접수번호 39702 호 접수일자 1980.6.11. 채권최고금액 48 백만원 채무자 김준석

<p>◎서울특별시 공고제 197 호</p> <p>건설업 ( 단종 ) 면허취소공고</p> <p>건설업법 제 38 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 단종 ) 면허를 취소하였음을</p>	<p>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2.5.11.</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강</p> <p>가. 취소업체명단 : 별첨 나. 취소일자 : 82.5.11.</p>
---	--

취 소 업 체 명 단

연번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취소면허번호	근 거 법 규
1	신화기공(주)	이춘섭	중구에 판동 70-27	강원 13-2	건설업법 제 38 조 제 1 항 제 12 호 및 동법제 42 조의 단서
2	영 공 사	박지원	용산구한강 로 1 가 24-1	서울 02-80 " 06-83 " 15-64	상 동
3	일성화학공업 (주)	홍인균	강서구등촌동 75-1	서울 06-125	상 동
4	한도설비(주)	조인복 백수용	송구의주로 1 가 3	서울 13-257 " 14-56	상 동

<p>◎서울특별시 공고제 199 호</p> <p>K·S 표시정지처분공고</p> <p>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정지처분하 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2.5.12. 서울특별시강</p>	<p>허가번호 및 허가일자 1285(76.3. 23), 1313(76.5.26), 1314(76.5.26) 1544(77.1.19), 1574(78.2.24)</p> <p>제조업체 : 우진콘크리트공업(주)</p> <p>소재지 : 서울도봉구상계동 1141</p> <p>대표자 : 김명석</p> <p>품명 및 규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F4403)</li> <li>· 보도용 철근콘크리트관 (KSF4001)</li> <li>· 콘크리트섬세블럭 (KSF 4006)</li> </ul>
---	---

<p>• 철근콘크리트케블트로프(KSF4011)          • 철근콘크리트근가(전제품)          처분기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처분사유: 공업표준화법위반</p> <p>◎서울특별시 공고제 200 호</p> <p style="text-align: center;">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p> <p>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 의거 K·S 표시정지처분한바 있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동 처분을 해제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준해 이를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2.5.12. 서울특별시 장</p> <p>허가번호: 제 1799 호          허가일자: 79.8.16.          제조업체명: 신진밸브공업(주)          대표자: 박찬언          소재지: 서울구로구가리봉동 444          규격번호: KSB 2361          품 명: 주강 10 kg f / cm 플랜지형그로브밸브          종류 및 등급: φ80 (화학장치용)          처분일자: 82.2.6          해제일자: 82.5.6</p>	<p>◎서울특별시 공고제 201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p> <p style="text-align: center;">주택건설촉진법 제 7 조의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주택건설사업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등록번호</th> <th style="width: 15%;">대표자 성명</th> <th style="width: 15%;">상호</th> <th style="width: 15%;">영업소재지</th> <th style="width: 15%;">말소 일자</th> </tr> </thead> <tbody> <tr> <td>78-312</td> <td>이양성</td> <td>중동개발공사</td> <td>중구신당동 250-9</td> <td>82.4.28</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1982.5.12. 서울특별시 장</p> <p>◎서울특별시 공고제 202 호</p> <p style="text-align: center;">구로지구환지계획공람공고</p> <p>1. 사업시행중인 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일부 변경결정('82.3.11)으로 환지계획을 조정수립하였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에 의한 환지계획인가요청</p>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상호	영업소재지	말소 일자	78-312	이양성	중동개발공사	중구신당동 250-9	82.4.28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상호	영업소재지	말소 일자							
78-312	이양성	중동개발공사	중구신당동 250-9	82.4.28							

<p>동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 일간 공람시킨다.</p> <p>2.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권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p> <p>가. 사업명 : 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시행면적 : 1,474,896㎡ (446,156 평)</p> <p>다. 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영등포구 대림동, 신길동 및 도림동 각일부</p> <p>라. 특기사항 :</p> <p>1) 환지계획은 평가식 환지방법</p>	<p>으로 수립하였음.</p> <p>2) 환지대상 기준면적은 일차 토지는 198㎡(60평) 이상, 건물이 있는 토지는 66㎡(20평) 이상, 다대지는 89㎡(27평) 이상으로 하였음</p> <p>3) 환지대상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는 금전 청산함.</p> <p>4) 가능한한 원위치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용지등 환지계획기준에 맞지 않는 토지는 대응한 위치에 미환지 하였음.</p> <p>5) 정리전후의 평가는 '79.3.29 사업시행인가 당시를 평가시점으로 하였음.</p> <p>* 도서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1982.5.12. 서울특별시</p>
--	--

사 령

1982년 5월 10 일사

령제 196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은 탄	도봉구보건소	종로구보건소	지방간호기사
박 병 선	동대문구보건소	중구보건소	"
김 윤 자	중구보건소	용산구보건소	"
이 순 예	종로구보건소	동대문구보건소	"
노 영 희	강남구보건소	"	"
유 인 자	도봉구보건소	성북구보건소	"

성명	발명사항	현부처	직급
우애순	강서구보건소	마포구보건소	지방간호기사
오경자	마포구보건소	강서구보건소	"
지순애	강남구보건소	영등포구보건소	"
정영자	성동구보건소	강남구보건소	"
김종숙	동대문구보건소	도봉구보건소	"
김영자	종로구보건소	"	"
조운숙	영등포병원	종로구보건소	"
김조자	동부병원	성동구보건소	"
김화영	영등포병원	강남구보건소	"
최영희	도봉구보건소	종로구보건소	지방간호기사보
정진숙	동대문구보건소	"	"
이경자	강동구보건소	중구보건소	"
성인영	강서구보건소	용산구보건소	"
김군자	"	"	"
최영자	도봉구보건소	성동구보건소	"
이정필	성북구보건소	"	"
박화성	성동구보건소	동대문구보건소	"
신승수	도봉구보건소	"	"
박말순	성동구보건소	"	"
서정자	도봉구보건소	성북구보건소	"
이성춘	동대문구보건소	서대문구보건소	"
박복순	"	마포구보건소	"
이수산	마포구보건소	강서구보건소	"
복소균	중구보건소	도봉구보건소	"
이육자	성북구보건소	"	"
정육춘	"	"	"
김순겸	서대문구보건소	은평구보건소	"
정영애	용산구보건소	"	"
김완순	동작구보건소	동부병원	"

성 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방경순	성북구보건소	동부병원	지방간호기사보
강란숙	도봉구보건소	"	지방간호기원
유정일	성북구 "	영등포병원	지방간호기사보
최춘남	종로구 "	"	"
손영희	동대문구 "	"	지방간호기원
박정희	용산구 "	아동병원	지방간호기사보
권오임	동대문구 "	"	"
조명순	" "	"	지방간호기원
김명자	성동구 "	"	"
정순악	성북구 "	"	"
김창선	강남구 "	"	"
김안자	" "	"	"
고순애	강동구 "	"	지방간호기원보
안숙희	관악구 "	정신병원	지방간호기사보
이승주	용산구 "	"	"
김민순	중구 "	"	지방간호기원
전영기	강남구 "	서대문병원	지방간호기사보
허연자	성북구 "	"	지방간호기원
진순희	강서구 "	"	"
한기숙	성북구 "	"	"
임혜영	종로구 "	"	지방간호기원
허진선	용산구 "	"	지방간호기원보
김태숙	동대문구 "	"	"
최정자	용산구 "	"	"
이정숙	도봉구 "	"	"
김영초	용산구 "	"	"
조양희	동대문구 "	"	"
김기숙	종로구 "	"	"
정순식	마포구 "	"	"





<p>강남구공원녹지과 이 한 영 지방행정주사보</p> <p>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2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 제함.</p> <p>령제 212 호</p> <p>은 경 구 권 기 범 지방건축기사</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항 1.2 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p> <p>종합건설본부 장 영 순 지방건축기사보</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항 1.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p> <p>령제 213 호</p> <p>동대문구시민국 신 경 덕 지방서기관</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2 항에 의 거 감봉 2 월에 처함.</p>	<p>성동구재무국 김 형 수 지방서기관</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2 항 2 호 에 의거 전체에 처함.</p> <p>◎ 1982 년 5 월 10 일자 령제 214 호</p> <p>영 등 보 구 김 문 철 농림지원보</p> <p>용산구 파견근부를 명함. ( 82.5.10-82.6.9 )</p> <p>령제 215 호</p> <p>도 로 과 민 중 식 지방토목기사보</p> <p>원에 의하여 그직을 편함.</p> <p>◎ 1982 년 5 월 12 일자 령제 216 호</p> <p>강서구산림과 동 호 식 지방행정서기</p> <p>강서구 행정서기</p>
---	--

<p>강서구산업과 지방행정서기 강서구 행정서기</p>		<p>강남구 산업과 행정서기 강남구 지방행정서기</p>
<p>강남구기획감사과 지방행정주사보 강남구 행정주사보</p>	이 원 규	<p>강남구쌀재판 농림기원보 강남구 지방농림기원보</p>
<p>강남구재무과 지방행정주사보 강남구 행정주사보</p>	이 두 성	<p>명제 217 호 아 동 상 담 소 지방별정직 8 급상당 이 진 피</p>
<p>강남구사회복지과 지방행정주사보 강남구 행정주사보</p>	김 락 중	<p>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종합기술시험연구소 지방별정직 7 급상당 최 영 훈</p>
<p>강남구산업과 지방행정서기 강남구 행정서기</p>	공 정 용	<p>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1982 년 5 월 13 일 자 명제 218 호</p>
<p>강남구공원녹지과 지방농림기원보 강남구 농림기원보</p>	이 성 주	<p>회 계 과 이 서 용 지방행정사무원</p>
<p>강서구수도관리과 행정서기 강서구 지방행정서기</p>	이 근 형	<p>총무처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 ( 사건 82-42:82.4.30 ) 에 의거 82.2.6.</p>
<p>강서구수도관리과 행정서기</p>	조 병 천	<p>자 견책 처분을 취소함.</p>
<p>강서구 지방행정서기</p>		<p>서 울 특 별 시 장</p>